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록

- 일 시 : 2011. 12. 5(월), 15: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박강철(위원장), 고부자, 김경표, 김광억, 김명자,
김용수, 이필영, 이해준, 장헌덕, 정명섭(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아산 외암마을 이준광가옥 사랑채 신축	공개
2	함양 일두고택 주변 정자 이전·건축	공개
3	청송 송소고택 주변 건물 신축	공개
4	구미 쌍암고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공개
5	단양 조자형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공개

【검토사항】

6	개구림비당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가치 검토	공개
---	------------------------	----

【보고사항】

7	2012년 주요업무 계획(중요민속문화재(가옥·마을))	공개
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 처리보고(2건)	공개

심 의 사 항

1. 아산 외암마을 이준광 가옥 사랑채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내 이준광 가옥 사랑채를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아산 외암마을」 내 이준광 가옥의 별도 출입문이 없어 관람객들로 부터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아 진입공간에 사랑채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대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76번지
- (4) 사업내용 : 사랑채 신축
 - 건축면적 : 19.44m²
 - 구조 : 목조초가
 - 층수 및 층고 : 1층, 약 3.0m
- (5) 사업비 : 77백만원

라. 현지조사 의견(2011.11.16)

[문화재위원 000]

- 이준광가옥 사랑채 증축 건은 허가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본래 신축계획 사랑채 자리에는 헛간과 돼지우리가 있던 자리이며, 이 가옥의 원래 사랑채는 이 가옥 전면의 기와집(타인거주)이었다.
 - 사랑채 증축 시 배치상 △형 마당이 형성되어 이 지역에 맞지 않다.
 - 단지 대문간은 수리·보수되어야 한다.

[문화재전문위원 000]

-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건축행위는 민속마을의 고유한 특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단, 본건은 사적인 영역을 확보하여 원만한 주생활을 영위하고자 대문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건물의 신축보다는 대문을 설치하는 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마. 참고사항<아산시 의견>

- 아산 외암마을 보호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민원인의 의견은 소실된 가옥이라고는 하나 기존 외암마을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기존에 있었던 사랑채가 있었다는 것은 자료상 나오지 않음
- 사랑채 신축의 행위는 문화재의 경관 및 보존에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현상변경 허가가 될 시 외암마을 거주민들의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고증자료가 없고, 건물배치상에도 이질감이 있는 등 합당하지 않음. 다만, 담장, 대문간의 보수·수리는 필요하다고 봄

2. 함양 일두고택 주변 정자 이전·건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고택」 주변에 정자를 이전·건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함양 일두고택」 주변에 정자를 이전·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 함양 상림(천기 제154호)에 있는 기존 정자를 이건하는 것으로 철거 관련은 천연기념물분과에서 기허가함 / 2011.8.26)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 000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고택」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번지
- (3) 신청위치 :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34-4번지(문화재 외곽으로부터 약 178m 이격)
- (4) 사업내용 : 정자 이건 건축 (동 내용은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한 것임)
 - 사업면적 : 1,994.0m²
 - 건축면적 및 연면적 : 15.48m²
 - 건물높이 : 5.185m
 - 구조 : 목구조, 한식기와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 2011.11.4)

- 함양 상림에 있는 기존 정자를 이 건하는 것으로(이미 기허된 사항임) 규모도 작고 경관적으로 큰 영향은 없으나, 이 건 장소를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일두고택과 마을경관에 영향이 없도록 남측 안쪽으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음

마. 참고사항(함양군 의견)

- 신청인이 옮기고자 하는 정자는 천연기념물 제154호에 존치되고 있는 정자로 전통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경관과 어울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가결

3. 송소고택 주변 건물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청송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 「송소고택」 주변에 건물(2동)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송소고택」 주변 전통한옥 체험시설 사업으로 다목적실, 행랑채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 「송소고택」
 - 소재지 :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6번지
- (3) 신청위치 :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2-4, 172-7번지(문화재 외곽으로부터 약 70m 이격)
- (4) 사업내용 : 다목적실, 행랑채 신축(2동) - 현지조사의견을 반영한 것임

구 분	다목적실(1층)	행랑채(1층)	비 고
사업면적	1,707.00㎡		
건축면적 및 연면적	50.40㎡	36.00㎡	
건축높이	5.15m	5.50m	
구조 및 지붕형태	목구조, 한식기와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1.6.23)

- 전통한옥체험 가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축예정지가 원지형 보존구역에 속해있으나, 전통한식으로 당해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게 건립하므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건물의 높이는 원경상에서 문화재보다 높지 않게 하고 화장실의 외부창은 전통 창호형식으로 함

마. 참고사항<청송군 의견>

- 한옥체험 관광객의 편의제공 시설로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됨

바. 의결사항

- 가결

4. 구미 쌍암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05호 「구미 쌍암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 기 시행(2009.12.14) 중인 중요민속문화재 제105호 「구미 쌍암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조정 신청(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0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05호 「구미 쌍암고택」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239번지
- (3) 신청내용 : 구미 쌍암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전방 및 측면과 배면 1구역의 일부를 2구역으로 조정(과도한 제한)
<기 시행중인 현상변경허용기준(2009.12.14)>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 전통한옥형태에 한하여 기존건물 범위 내 재·개축 행위 허용.		
2구역	-	· 신축 : 1층, 높이 7.5m 이하 · 기존건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농가형주택 농가형참고
3구역	· 신축 : 1층, 높이 5m 이하 · 기존건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신축 : 1층, 높이 7.5m 이하 · 기존건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주거시설 농가형주택 농가형참고
4구역	·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		
공통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 성 · 절토 금지 · 시설물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 건물 최고 높이 :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1.11.16)

- 1구역 중 도로명 주소 13-3~5번지 너머는 2구역으로 함
- 전방의 농지는 1구역으로 함
- 측면과 배면의 인접 필지는 현장에서 조정한 곳을 1구역으로 함
- 1구역의 허용기준 내용인“전통한옥 형태에 한하여 재·개축”은 삭제하고
”기존 건물범위 내 개·보수 허용“ 내용 첨가함

마. 검토의견(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구미 쌍암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조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 조사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 기존건물 범위 내 개·보수 행위 허용.		
2구역	-	· 신축 : 1층, 높이 7.5m 이하 · 기존건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농가형주택 농가형창고
3구역	· 신축 : 1층, 높이 5m 이하 · 기존건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신축 : 1층, 높이 7.5m 이하 · 기존건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주거시설 농가형주택 농가형창고
4구역	·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		
공통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 성 · 절토 금지 · 시설물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 건물 최고 높이 :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조정안으로 함

5. 단양 조자형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단양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5호 「단양 조자형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은 기 시행(2008.12.23) 중인 중요민속문화재 제145호 「단양 조자형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신청(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45호 「단양 조자형가옥」
 -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49번지
- (3) 신청내용 : 단양 조자형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조자형가옥 배면과 우측 일부 1, 2구역을 2, 3구역으로 조정(과도한 제한)
<기 시행중인 현상변경허용기준(2008.12.23)>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1구역	○ 신축 불가 ○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규모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3구역	○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문화재 입지 여건과 주변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 - 임야는 절대보존을 원칙으로 함 -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에 건축을 제한함 ○ 매장문화재 분포 가능 지역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처리 ○ 공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축 제한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 2011.11.24)

- 조자형가옥 전면 도로 건너편 강변구역과 후면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함
- 조자형가옥 좌측 1,2구역 중 능선너머 조망되지 않는 지역으로 구역을 추가하여 3구역(평지붕 7.5m, 경사지붕 10m)으로 함(단, 도로방향은 도로로부터 100m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함)
- 현행 3구역은 4구역으로 조정함

마. 검토의견(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단양 조자형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의 조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 조사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불가 ○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규모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0m이하(2층이하)	구역 추가
4구역	○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문화재 입지 여건과 주변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야는 절대보존을 원칙으로 함 -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에 건축을 제한함 ○ 매장문화재 분포 가능 지역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처리 ○ 공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축 제한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조정안으로 함

검 토 사 항

6. 개구림비당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제주 강정마을 개구림비당의 중요민속문화재 지정가치 현지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중요민속문화재 지정가치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개구림비당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제주 해군기지 조성사업 부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국정감사(9.20)에서 김재윤 의원이 구림비바위 일대의 보존 조치를 요구하였음
- 문화재청은 구림비바위 일대에 대한 민속신앙 유적 확인 조사(9.28) 및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 현장 답사(10.5/이상 발굴제도과)를 실시하였으며, 개구림비당의 중요민속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가 3인이 참여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지정가치 여부를 검토 받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현지조사 일자 : 2011. 11. 4(금)
- (2) 조사 대상 : 개구림비당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제주 해군기지 조성사업 부지 내)
- (3) 내 용 : 개구림비당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보존 가치 조사
- (4) 조사자 : 000(중앙대 교수), 000(목포대 교수), 000(서울대 교수)
 - 행정지원 : 문화재청, 제주도청 및 서귀포시 공무원
 - 문화재청 : 무형문화재과 000, 문화재감정위원 000
 - 제주도청 : 문화정책과장 000, 문화재관리담당 000, 000
 - 서귀포시 : 000 문화재전임연구원
 - * 서귀포시에서 20년간 문화재 담당, '강정향토지'편집위원

라. 현지조사 의견

<각 조사자 의견 요약 / 2011. 11. 4>

- 훼손이 심하고 주민 출입도 거의 없으며 향후 제주도의 민속문화재 지정 대상에서도 개구림비당은 제외됨(000 교수)
- 마을 단위에서의 민속적 가치는 인정되지만 역사성이나 학술성은 부족함(000 교수)
- 제주도 여러 신당 중 하나이며 한국의 수많은 동제당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역사적·학술적 가치는 낮음(000 교수)

마. 참고사항(무형문화재과 의견)

- 조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개구림비당의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가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람
- ※ 참고자료 붙임(조사보고서 및 의견서)

바. 의결사항

- 부결
- 현지조사자 의견에 따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1.4	대상문화재	제주 강정마을 개구림비당		
조사자	성명	000	전공분야	민속학	
	소속	중앙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문화재 종류	중요민속문화재			
	②문화재 명칭	제주 강정마을 개구림비당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개구림비당은 여드렛당으로서 해안가의 깊지 않은 바위굴 형태로서 입구에는 구림비나무가 위치한다. 당의 규모가 크지 않은 관계로 주민 모두의 신당이기는 몇 명 해녀를 비롯한 주민들에게만 출입했던 특이한 곳이라고 하겠다. 원래 이 당은 법환동에서 강정으로 시집을 온 사람들이 시작하여 강정마을 사람들로까지 출입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④연혁·유래 및 특징	제주도 강정마을 개구림비당은 바닷가에 위치한 당으로서 매우 주목될 만한 당이다. 특히 이 당은 해녀들을 중심으로 한 개인 별 신앙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 개구림비당의 훼손이 너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조사자들이 해변으로 갔을 때 당의 정확한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 특히 구림비나무에 일상적으로 걸려있는 지전과 물색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훼손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지정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개구림비당이 폐쇄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다른 곳에 당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신당조사서귀포시권』(제주특별자치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9, 448-449쪽)에 보면 ‘강정동 냇길이소 여드렛당’이 개구림비에서 옮겨온 당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이 기록은 개구림비당의 폐쇄에 따라 만들어진 당이라고 판단된다.				

조 사 의 견 서

□ 제목 : 제주 강정마을 개구림비당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조사요청일	2011. . [목]	의뢰자	무형문화재과 (인)
조사회신일	2011.11월. [목]	조사자	
조사내용	○ 제주 강정마을 개구림비당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조사방법	현지조사 (●)	서면검토 ()	
조사의견	<p>조사일시: 2011년 11월 4일(금)</p> <p>제주도 강정마을의 개구림비당은 바닷가에 위치한 당으로서 매우 주목될 만한 당이다. 특히 이 당은 해녀들을 중심으로 한 개인 별 신앙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p> <p>개구림비당은 여드렛당으로서 해안가의 깊지 않은 바위굴 형태로서, 입구에는 구림비나무가 위치한다. 당의 규모가 크지 않은 관계로 주민 모두의 신당이기는 몇몇 해녀를 비롯한 주민들에게만 출입했던 특이한 곳이라고 하겠다. 원래 이 당은 법환동에서 강정으로 시집을 온 사람들이 시작하여 강정마을 사람들로까지 출입이 확대되었다고 한다.</p> <p>문제는 현재 개구림비당의 훼손이 너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조사자들이 해변으로 갔을 때 당의 정확한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훼손된 상태였다. 특히 구림비나무에 일상적으로 걸려있는 지전과 물색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훼손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p> <p>개구림비당이 폐쇄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다른 곳에 당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신당조사·서귀포시권』(제주특별자치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9, 448-449쪽.)에 보면 '강정동 넷길이소 O드렛당'이 개구림비에서 옮겨온 당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이 기록은 개구림비당의 폐쇄에 따라 만들어진 당이라고 판단된다.</p> <p>이처럼 개구림비당은 개인들이 다니는 당으로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훼손이 심한 상태이며, 동시에 주민들의 출입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제주도 내에서 지방 중요민속문화재로 송당본향당 등 5개의 당을 지정한 바 있다. 추후 지정대상 중 하나로 강정리 본향당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구림비당은 그런 대상에서도 속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구림비당을 국가 차원의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p>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1.4	대상문화재	제주 강정마을 개구림비당	
조사자	성명	000	전공분야	민속학
	소속	목포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	①문화재 종류	중요민속문화재		
	②문화재 명칭	제주 강정마을 개구림비당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개구림비당은 신도들이 8일, 18일, 28일에 찾아가는 여드렛당에 속한다. 개구림비당은 강정마을의 개구림비 해안 동남쪽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당에 모셔진 신은 여신이며, 강정마을의 동쪽에 위치한 법환동에 시집온 여인(해녀)들이 주로 다녔던 곳이다. 이들 이외에도 치병을 위한 목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일부도 이 신당에 다녔다고 한다.		
	④연혁·유래 및 특징	<p>개구림비당은 현재 당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현지조사 결과 개구림비당의 입구와 대문역할을 하던 두 바위는 확인이 되지만, 제단이나 신목 등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과거에 당의 기능이 유지될 때의 사진을 보면, 두 개의 큰 바위 위에 잡목이 우거져 있고 그 안에 지전·물색이 걸려 있고 초와 제물 등이 차려진 것을 볼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p> <p>개구림비당이 폐쇄된 이후 이 당에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당으로 옮겨 갔는지는, 마을 분위기 상 직접 파악하지 못했다. 안내를 맡았던 마을 주민이자 서귀포시 문화계장 윤봉택씨도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발간된 한 보고서(제주신당조사)에서는, 개구림비당이 ‘넋길소 여드렛당’으로 옮겨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원래 넋길이소에는 일뤼당 하나만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개구림비당이 이곳으로 옮겨와서 두당이 나란히 있다.”라고 언급하고, 개구림비당을 멸실로 처리하고 넋길이소 여드렛당을 신규 발굴 보고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으로 볼때 개구림비당이 폐쇄되면서 넋길이소 여드렛당으로 그 기능을 옮긴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마을의 격양된 분위기로 인하여 현지 주민을 면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을 이전한 시기가 해군기지 부지 선정 이후인지, 그 이전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명확한 것은 제주도 신당의 경우 주민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신당이 폐쇄된다면, 신당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p>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지정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 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p>제주도에는 2009년 현재 총 391개의 신당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개의 신당(월평다락굿당, 수산본향당, 와흘본향당, 세미하로산당, 송당본향당)이 제주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외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당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시도하고 있는데 주교 본향당이 거론되고 있고 개구림비당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연구와 현지조사를 종합해 보건대, 개구림비당은 제주도 여러 신당 중의 하나로서 마을 단위에서의 민속적 가치는 인정되지만, 국가 지정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될 정도의 역사성이나 학술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p> <p><참고문헌> 강정향토지,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1996 향토 강정, 윤경로, 디딤돌, 2001(개정 증보판)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제주도특별자치도, 2009)</p>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1 년 11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000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조 사 의 견 서

□ 제목 : 제주 강정마을 개구림비당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조사요청일	2011. . []	의뢰자	무형문화재과	[인]
조사회신일	2011. . []	조사자		
조사내용	○ 제주 강정마을 개구림비당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조사방법	현지조사 (●)	서면검토 ()		
조사 의견	<p>○조사일시: 2011년 11월 4일(금)</p> <p>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개구림비당은 신도들이 8일, 18일, 28일에 찾아가는 여드랫당에 속한다. 개구림비당은, 강정마을의 개구림비 해안 동남쪽 언덕에 자리잡고 있다. 이 당에 모셔진 신은 여신이며, 강정마을의 동쪽에 위치한 법환동에서 시집은 여인(해녀)들이 주로 다녔던 곳이다. 이들 이외에도 치병을 위한 목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일부도 이 신당에 다녔다고 한다.</p> <p>개구림비당은 현재 당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현지조사 결과 개구림비당의 입구와 대문 역할을 하던 두 바위는 확인이 되지만, 제단이나 신목 등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과거에 당의 기능이 유지될 때의 사진을 보면, 두 개의 큰 바위 위에 잡목이 우거져 있고 그 안에 지천·불새이 걸려 있고 초와 제물 등이 차려진 것을 볼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p> <p>개구림비당이 폐쇄된 이후 이 당에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당으로 옮겨 갔는지는, 마을 분위기 상 직접 파악하지 못했다. 안내를 맡았던 마을 주민이자 서귀포시 문화계장 윤봉택 씨도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발간된 한 보고서(제주신당조사)에서는, 개구림비당이 '넋길이소 여드랫당'으로 옮겨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원래 넋길이소에는 일뤼당 하나만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개구림비당이 이곳으로 옮겨와서 두당이 나란히 있다."라고 언급하고, 개구림비당을 멸실로 처리하고 넋길이소 여드랫당을 신규 발굴 보고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개구림비당이 폐쇄되면서 넋길이소 여드랫당으로 그 기능을 옮긴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마을의 격양된 분위기로 인하여 현지 주민을 면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을 이전한 시기가 해군기지 부지 선정 이후인지, 그 이전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명확한 것은 제주도 신당의 경우 주민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신당이 폐쇄된다면, 신당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개구림비당의 이전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p> <p>제주도에는 2009년 현재 총 391개의 신당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개의 신당(월평다락굿당, 수산본향당, 와흘본향당, 세미하로산당, 송당본향당)이 제주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외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당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시도하고 있는데 주로 본향당이 거론되고 있고 개구림비당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연구와 현지조사를 종합해 보면, 개구림비당은 제주도 여러 신당 중의 하나로써 마을 단위에서의 민속적 가치는 인정되지만, 국가 지정 중요 민속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의 역사성이나 학술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p> <p><참고문헌> 강정향토지,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1996. 향토 강정, 윤경로, 디딤돌, 2001(개정 증보판).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제주특별자치도, 2009.</p>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1.4	대상문화재	제주 강정마을 개구림비당	
조사자	성명	000	전공분야	문화인류학
	소속	서울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 요 지 정 사 항 검 토	①문화재 종류	중요민속문화재		
	②문화재 명칭	제주 강정마을 개구림비당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강정마을의 구림비 해안 동남쪽 언덕에 위치한 개구림비당은 신당에 가는 날이 8일과 18일, 28일인 여드렛당에 속한다. 이 당에 모시는 신은 여신이며, 강정마을의 동쪽에 위치한 마을에서 시집온 여인(해녀)들이 주로 다녔고, 이들 이외에도 치병을 위한 목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일부도 이 신당에 다녔다.		
	④연혁·유래 및 특징	<p>현지조사 결과 개구림비당의 대문 역할을 하던 두 바위는 확인이 되지만, 신당의 구성 요소 중에서 중요한 제단이나 신목 등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해군기지의 부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 마을 주민들이 출입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신앙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었다.</p> <p>개구림비당이 폐쇄된 이후에 이 당에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당으로 옮겨 갔는지는 조사당일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사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안내를 맡았던 마을 주민이자 서귀포시 문화계장 윤봉태씨와 면담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도 이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제주도 신당과 관련해 2009년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강정마을 신당 중의 하나인 냇길이소 여드렛당이 개구림비당에서 옮겨온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 상 현지 주민을 면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을 이전한 시기가 해군기지 부지 선정 이후인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조사와 문헌을 통해 파악한 점은 제주도 신당의 경우 여러 사정으로 신당이 폐쇄된다면 이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p> <p>제주도에서는 2009년 현재 총 391개의 신당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 6개의 신당이 제주도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제주도 지정 문화재가 아닌 나머지 당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고 2009년의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개구림비당보다는 분향당을 우선 고려하였다.</p>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지정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p>개구림비당이 이전부터 해녀들의 당으로 존재해 왔고, 마을의 5개 신당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의 이전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민속문화재라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신당을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점은 당이 가지고 있는 공간과 관련된 고유한 가치를 감소시킨다. 이와 함께 제주도 여러 신당 중의 하나라는 점, 좀더 넓혀 생각했을 때, 한국의 수많은 동계당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학술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는 낮다고 생각된다.</p> <p>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개구림비당은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에 포함되어야 할, 국민 생활의 보편적 흐름을 보여주는 역사성이나 학술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p> <p><참고문헌> 강정향토지,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1996 향토 강정, 윤경로, 디딤돌, 2001(개정 증보판)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제주도특별자치도, 2009)</p>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1 년 11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000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p>		

조사요청일	2011. .	의뢰자	무형문화재과 [인]
조사회신일	2011.11.14	조사자	

조사내용	○ 제주 강정마을 개구림비당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	----------------------------------

조사방법	현지조사 (●)	서면검토 ()
------	----------	----------

조사 의견	<p>조사일시: 2011년 11월 4일(금)</p> <p>강정마을의 구림비 해안 동남쪽 언덕에 위치한 개구림비당은 신당에 가는 날이 8일과 18일, 28일인 여드렛당에 속한다. 이 당에 모시는 신은 여신이며, 강정마을의 동쪽에 위치한 마을에서 시집은 여인(해너)들이 주로 다녔고, 이들 이외에도 치병을 위한 목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일부도 이 신당에 다녔다.</p> <p>현지조사 결과 개구림비당의 대문 역할을 하던 두 바위는 확인이 되지만, 신당의 구성 요소 중에서 중요한 제단이나 신목 등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해군기지의 부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 마을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신앙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었다.</p> <p>개구림비당이 폐쇄된 이후에 이 당에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당으로 옮겨 갔는지는 조사 당일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사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안내를 맡았던 마을 주민이자 서귀포시 문화계장 윤봉택씨와 면담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도 이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제주도 신당과 관련해 2009년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강정마을 신당 중의 하나인 냇길이소 여드렛당이 개구림비당에서 옮겨 온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 상 현지 주민을 면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을 이전한 시기가 해군기지 부지 선정 이후인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조사와 문헌을 통해 파악한 점은 제주도 신당의 경우 여러 사정으로 신당이 폐쇄된다면 이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p> <p>제주도에는 2009년 현재 총 391개의 신당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 6개의 신당이 제주도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제주도 지정 문화재가 아닌 나머지 당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고 2009년의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개구림비당보다는 본향당을 우선 고려하였다.</p> <p>개구림비당이 이전부터 해너들의 당으로 존재해 왔고, 마을의 5개 신당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의 이전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민속문화재라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신당을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점은 당이 가지고 있는 공간과 관련된 고유한 가치를 감소시킨다. 이와 함께 제주도 여러 신당 중의 하나라는 점, 좀더 넓혀 생각했을 때, 한국의 수많은 동계당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학술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는 낮다고 생각된다.</p> <p>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개구림비당은 국가 지정 중요 민속 문화재에 포함되어야 할, 국민 생활의 보편적 흐름을 보여주는 역사성이나 학술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지정 중요 민속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p> <p>참고문헌 강정향토지,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1996. 향토 강정, 윤경로, 디딤돌, 2001(개정 증보판).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제주특별자치도, 2009.</p>
-------	--

[참고자료]

개구림비당 등 조사 사진



내기릿소당 - 가운데 설명자는 000 서귀포시 연구원



강정 본향당



서 당



개구림비당 진입로 들어가고 있는 조사위원과 관계자



개구림비당 전경



개구림비당 앞에서 해군 측의 현황 설명
* 가운데 등을 보이는 사람이 해군 측 관계자



개구림비당 앞에서 설명하는 000 감정위원



개구림비당 앞에서 의견 나누는 조사위원들



개구림비당을 보며 의견을 말하고 있는 000 교수



개구림비당 현장을 둘러보는 조사위원들(1)



개구림비당 현장을 둘러보는 조사위원들(2)



개구림비당 현장을 둘러보는 조사위원들(3)



개구림비당에서 철수하는 조사위원과 관계자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표시된 공사반대 암시 구호

보고 사항

7.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중요민속문화재(가옥·마을)]

가. 제안사항

중요민속문화재(가옥·마을) 분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요민속문화재(가옥·마을)]

-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한 전통가옥 보존·관리
 - 전통가옥 및 민속마을 생활기본시설 세부설치기준 마련
 - '11년도 마련 지침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 세부기준 마련
 - 전통가옥 경상보수 및 경상관리
 - 전통가옥 및 민속마을의 경미사항에 대해 수시 보수(7.2억원)
 - 전통가옥의 일상관리를 위한 경상관리비 지원(7.8억원)
 - 중요민속문화재(마을, 가옥) 보수·정비 추진(77.8억원)
 - 민속마을(4개소/58.5억원), 가옥(60개소/19.3억원)
 - 전통가옥 기록화 사업 추진
 - 나주 남파고택 등 4건 현황 설명, 해설, 실측, 사진 및 민속조사 등 DB화(1월~11월/2.5억원)
- 생활공간으로서 민속마을, 마을의 진정성 회복 및 다양화
 - 문화·교육·체육 등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마을내 공동체 활동 공간 설치 지원(문화·교육·체육활동 등)
 - 민속마을 「마을장인」 지정, 마을의 진정성 확보
 - 마을 내 단절되어 가는 기·예능 보유자 적극 발굴, 「마을장인」으로 지정
 - 민속마을의 진정성·완전성 회복을 위한 전승체제 구축
 - 예) 뱃사공, 음식장, 선유줄불놀이장, 장승장, 공예장, 초가장, 담장장 등

- 민속마을 지정 다양화로 마을지정 외연 확대 추진(근대시기까지)
 - 양반마을 중심의 지정에서 벗어나, 마을의 시대·지역·기능적 성격 등에 따라 지정대상 다양화하여 마을지정 추진
 - 예) 해녀마을, 산촌마을, 어촌마을, 안동포마을, 근대민속마을 등
- 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 종합적·중장기적 정비방향 제시
 - 가옥의 신·증축의 허용기준,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수용의 한계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보존·정비방안 마련(6월중)

□ 역사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단계적 복원·정비사업 추진

- 세계유산 역사마을 보수정비
 - 예산 : 총 77억원(국고 54억원, 지방비 23억)/하회 27억원, 양동 50억원
 - 초가이영잇기, 퇴락가옥 정비, 경관저해가옥 정비 등
- 역사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6월중 완료/4억원)
 - 종합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건축, 경관 등)
-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연결하는 선비길 복원('11~'12년/7억원)
 -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간 연계된 관람프로그램 개발
- 양동마을 양반길 조성 통한 마을 자연하천 등 복원('11~'12년/15억원)

□ 세계유산 역사마을 브랜드가치 제고

- 관람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 관람체계 구축
 - 관람소재 및 관람기법 연구용역 추진(6월중 완료/2.8억원)
 -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관람프로그램 개발
 - 학교와 연계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개설
 - 주제별·소재별·대상별 차별화된 관람프로그램 운용 등
- 관람환경 개선 위한 관람 인프라 구축
 - 마을 내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 개선(음수대 등)
 - 제한관람방안을 통한 관련환경 개선방안 강구(지자체 협의)
 - 하회마을 : 입장료, 주차요금, 셔틀버스 요금 일원화 방안 검토
-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 추진('12~'14년)
 - 기본 및 실시설계('12년/4억원)
 - 마을 내 상점·식당(9개소) 저잣거리로 이전, 관람환경 개선 및 관람객을 위한 휴게시설 확충('13~'14년)
 - 기본 및 실시설계(1월/4억원), 유물전시관과 연계된 지역에 조성 추진

○ 양동마을 유물전시관 개관, 교육·홍보체제 구축

❖ 양동마을 유물전시관 개요

- 공사기간 : '07 ~ '11년
- 규 모 : 지상 2층, 연면적 2,079㎡
(전시면적 712㎡, 마을공동시설 243㎡, 관리동 366.56㎡, 마을회관 270㎡)

- 개관시기 : '12. 7. 31(세계유산 등재 2주년 기념일)
- 전시대상 유물현황 : 유물 약 3,000여점
 - 마을 내 종가 및 일반가옥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
 -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유물 등
- 향후 활용계획
 - 양동마을 관람 전 양동마을 역사 등에 대한 사전지식 습득
 - 관람객들에 대한 관람방법·프로그램 사전 교육을 통해 관람만족 제고
 - 개관 후 관람료 징수방안 검토

□ 전통가옥 등 유산가치 제고 및 활용 증대

○ 전통가옥 전승사업 발굴 및 지원

- 전통가옥 고택(종가 등) 대상 전승사업 발굴 및 활용활성화 지원
예) 전통의례, 가승음식 시연, 소장유물 전시 등

○ 민속마을 각 부처 지원사업 협의체 구축

- 각 부처 민속마을 지원사업 현황 파악(1월)
- 관련부처 간 민속마을 보존에 관한 MOU체결(5월)
- 공통 지원사업 추진(6월)

※ 농림부(농어촌체험마을), 농진청(전통테마마을), 산림청(산촌생태마을), 문광부(문화역사마을), 행안부(정보화마을)

○ 민속마을 야간관람 시범 추진

- 야간관람 실시 수요조사를 통한 시범실시대상 결정(3월중)
- 민속마을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위해 주기적으로 야간관람 실시

○ 민속마을 관계자 워크숍 개최, 관계자 간 소통창구 마련

- 마을 별 순회 실시(2012년은 하회마을 예정)
- 참가 : 문화재청·지자체 관계공무원, 민속마을 주민, 관계전문가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8.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중요민속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경주 양동마을 (중민제189호)	경북 경주시	경주시장	(경주 양동마을 세계유산 등재 표지석 설치) ○ 위치 : 양동마을 유물전시관 앞 ○ 문안 :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 크기 : 너비 1,800, 높이 1,340, 두께 995cm	조건부 허가	11.11.10
무안 나상열가옥 (중민제167호)	전남 무안군	000	(불량건물 철거) ○ 위치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543, 545번지 ○ 허가사항 - 정면8.3m×측면5m 목조슬레이트 단층주택 철거 ○ 허가조건 - 무안군청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철거를 추진토록 하고, 철거 전후 사진·도면 등 기록자료를 준공보고 시 우리 청으로 제출토록 함 ※ 해당 건물은 전 소유주 '000' 과 현 소유주 '000' 간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되어 대법원 상고 끝에 건물철거 판결이 난 사항임(문화재구역 내 있으나 중요민속문화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조건부 허가	11.12.01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